

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'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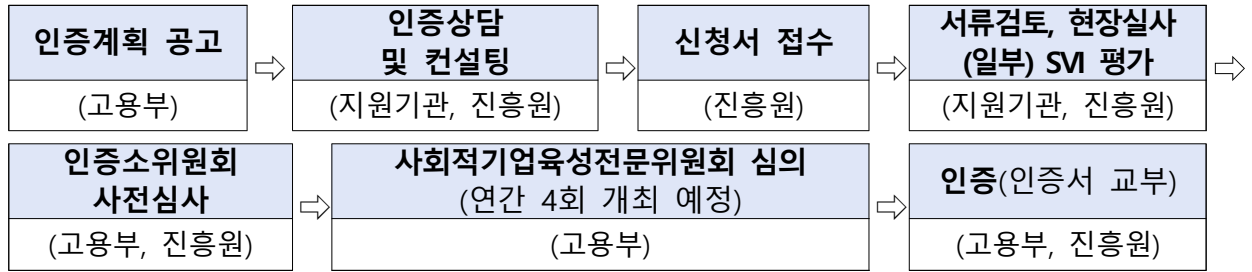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

I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

1.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

-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: 연중 접수
-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및 인증 절차
 -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)으로 온라인 제출함
 - 진흥원은 인증신청 접수한 후, 서류검토·현장실사를 실시함. 이 경우 기타(창의·혁신)형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판단을 위한 SVI 평가(일부)를 실시함
 - 진흥원은 현장실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토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함
 -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에서 심의하되, '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'(이하 '인증소위원회')에서 사전검토 후 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함
 -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,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함

<인증심사 절차>



○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일정

- 인증심사는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으로, 차수별 심사 일정안은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함

2. 인증신청 대상

○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'II' 항목의 심사기준(인증요건)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(법 제8조제1항제1호, 시행령 제8조)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
 - ▶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 - ▶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- ▶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▶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- ▶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▶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3. 제출서류

○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<「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>

- 조직형태 확인 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
- 유급근로자 명부
-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
 - ※ 사회서비스제공형(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), 일자리제공형(별지 제3호 서식), 지역 사회공헌형(별지 제4호 서식), 혼합형(별지 제5호 서식), 기타(창의·혁신)형(별지 제6호 서식)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
-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
 - ※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
 - ※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·세무법인의 확인
-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
-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
- 기타(창의·혁신)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신청서* 및 증빙서류 등(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)
 - ※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
-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

4. 접수처 및 방법

- 신청방법
 -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(<http://www.seis.or.kr>)

5.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
 - ☎ 031-697-7721~7729, 팩스 : 031-697-6916
-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권역별 지원기관(☎ 1800-2012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조

II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

□ 목 적

-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(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)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

□ 요건별 심사기준

1. 조직형태(법 제8조제1항제1호, 시행령 제8조)

- 가.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, 인사,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- 나.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2. 유급근로자 고용(법 제8조제1항제2호)

- 가.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
 - 다만,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(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,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)을 고용하여야 한다.
- 나.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.
 - *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
- 다.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 - 다만,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.
- 라.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.

마.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.

*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

3. 사회적 목적의 실현(법 제8조제1항제3호, 시행령 제9조)

가.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,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사회서비스제공형

- 1)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한다.
- 2)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.
- 3)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.

다. 일자리제공형

- 1)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한다.
 - * 다만,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함
- 2)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(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임원은 제외) 이어야 한다.
- 3) 취약계층에게 “괜찮은 일자리”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“괜찮은 일자리”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.
 - 의무 고용비율(30%)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‘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’하여야 하고,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.

라. 지역사회공헌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,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 - (지역사회공헌형 '가'형)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,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이어야 한다.
 - 해당 지역의 역사, 전통, 문화,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.
 - (지역사회공헌형 '나'형)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이어야 한다.
 - 빈곤, 낙후, 소외, 재난,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.
 - (지역사회공헌형 '다'형)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이어야 한다.
 -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.

마. 혼합형

- 1)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이어야 한다.
- 2)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'일자리제공형'과 '사회서비스제공형'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바. 기타(창의·혁신)형

- 1)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,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(SVI)*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※ 사회적가치지표(SVI: Social Value Index) 소개

- (개요)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·평가하는 지표
- (활용)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
- (구성) 총 14개 지표(100점 만점) 구성
 - * 사회적 성과(9개 지표, 60점), 경제적 성과(4개 지표, 30점), 혁신성과(1개 지표, 10점)
 - * 측정등급: 탁월(90점 이상), 우수(75~89점), 보통(60~74점), 미만(59점 이하)

< 기타(창의·혁신)형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세부평가항목 >

관점	범주	영역	평가내용	배점
사회적 성과 (25)	사업 활동 (25)	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	3. 내부운영,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정도	15
		사회적 목적 재투자	6. 수익의 조직내부, 외부 등 활용도	10
경제적 성과 (15)	재정 성과 (15)	매출성과	11.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	10
		영업성과	12. 수익성과 지속가능성	5
혁신 성과 (10)	기업 혁신 (10)	기업 활동의 혁신성	14. 과정 및 결과 혁신 정도	10
계		5개 지표		50

4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(법 제8조제1항제4호)

- 가.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(운영규정)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.
- 나.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- 다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·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.
 - 다만,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.
 - *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.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- 라.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.

마. 주식회사는 일반기업(모기업 포함)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.

바.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*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.

*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,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

5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법 제8조제1항제5호, 시행령 제10조)

가.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조직의 영업 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.
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.
- 공공매출(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)에 의한 수입,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.
-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.
- 자본 완전잠식,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(매출액의 규모, 수익구조 등)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나.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, 대표자 급여, 퇴직금, 채수당, 상여금,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.

6. 정관의 필수사항(법 제8조제1항제6호, 법 제9조, 시행령 제11조)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7.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(법 제8조제1항제7호)

가.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- 1)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- 2)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
- 3)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나.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.

다.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
*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(영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

라.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-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'손익계산서'상 당기순이익에서 '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'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□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

1. 인증심사 이의신청

○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다만, 인증요건의 흠결사항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.

2. 기타사항

○ 진흥원은 현장실사를 주관하며, 인증요건 검토 후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,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* 인증신청을 반려한 경우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진흥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

○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은 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」에 따른다.